박형준 / 3월 / 기초GS+ / 4회										
반구분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온라인첨삭반	515505	21	16	0	0	37	1	0.55%	5	181
실강+실영상반	515529	20	15	0	0	35	2	1.10%	5	
온라인첨삭반	516169	19	16	0	0	35	2	1.10%	6	
실강+실영상반	515335	18	14	0	0	32	4	2.21%	5	
실강+실영상반	515524	16	16	0	0	32	4	2.21%	7	
온라인첨삭반	515824	17	15	0	0	32	4	2.21%	6	
온라인첨삭반	515964	16	15	0	0	31	7	3.87%	6	
온라인첨삭반	516020	19	12	0	0	31	7	3.87%	5	
실강+실영상반	515457	16	14	0	0	30	9	4.97%	5	
실강+실영상반	515470	17	12	0	0	29	10	5.52%	5	
실강+실영상반	515421	16	13	0	0	29	10	5.52%	5	
실강+실영상반	515379	16	12	0	0	28	12	6.63%	5	
실강+실영상반	515546	14	14	0	0	28	12	6.63%	5	
온라인첨삭반	515007	16	12	0	0	28	12	6.63%	5	
온라인첨삭반	516297	14	14	0	0	28	12	6.63%	5	
실강+실영상반	515492	15	12	0	0	27	16	8.84%	5	
실강+실영상반	516047	16	11	0	0	27	16	8.84%	5	
실강+실영상반	515382	16	11	0	0	27	16	8.84%	5	
실강+실영상반	515516	12	15	0	0	27	16	8.84%	5	
온라인첨삭반	516190	14	13	0	0	27	16	8.84%	5	
실강+실영상반	515429	12	14	0	0	26	21	11.60%	6	
실강+실영상반	515486	15	11	0	0	26	21	11.60%	5	
실강+실영상반	515545	15	11	0	0	26	21	11.60%	5	
실강+실영상반	515568	13	13	0	0	26	21	11.60%	5	
온라인첨삭반	515532	18	8	0	0	26	21	11.60%	5	
온라인첨삭반	516026	13	13	0	0	26	21	11.60%	4	
실강+실영상반	514114	14	11	0	0	25	27	14.92%	5	
실강+실영상반	515523	16	9	0	0	25	27	14.92%	5	
실강+실영상반	515674	17	8	0	0	25	27	14.92%	5	
온라인첨삭반	515697	12	13	0	0	25	27	14.92%	5	
온라인첨삭반	516157	15	10	0	0	25	27	14.92%	6	
온라인첨삭반	516976	15	10	0	0	25	27	14.92%	5	
실강+실영상반	515491	14	10	0	0	24	33	18.23%	5	
실강+실영상반	515437	15	9	0	0	24	33	18.23%	5	
실강+실영상반	515512	13	11	0	0	24	33	18.23%	5	
온라인첨삭반	515667	14	10	0	0	24	33	18.23%	5	
온라인첨삭반	516116	11	13	0	0	24	33	18.23%	5	
실강+실영상반	515450	9	14	0	0	23	38	20.99%	5	
실강+실영상반	515366	18	5	0	0	23	38	20.99%	5	
실강+실영상반	515458	16	7	0	0	23	38	20.99%	5	
실강+실영상반	515462	16	7	0	0	23	38	20.99%	5	
실강+실영상반	515497	11	12	0	0	23	38	20.99%	5	
실강+실영상반	515510	13	10	0	0	23	38	20.99%	5	
실강+실영상반	516005	16	7	0	0	23	38	20.99%	4	
온라인첨삭반	515841	12	11	0	0	23	38	20.99%	5	
실강+실영상반	515192	15	8	0	0	23	38	20.99%	5	
실강+실영상반	516270	13	10	0	0	23	38	20.99%	6	
실강+실영상반	515393	12	10	0	0	22	48	26.52%	5	
실강+실영상반	515567	15	7	0	0	22	48	26.52%	5	
실강+실영상반	514398	18	4	0	0	22	48	26.52%	4	
실강+실영상반	515354	13	9	0	0	22	48	26.52%	5	
실강+실영상반	515463	12	10	0	0	22	48	26.52%	5	
실강+실영상반	515531	19	3	0	0	22	48	26.52%	5	
실강+실영상반	515657	16	6	0	0	22	48	26.52%	4	
실강+실영상반	514504	14	8	0	0	22	48	26.52%	5	
실강+실영상반	516079	14	8	0	0	22	48	26.52%	5	
온라인첨삭반	516737	11	11	0	0	22	48	26.52%	5	
실강+실영상반	515464	10	11	0	0	21	58	32.04%	5	
실강+실영상반	515554	13	8	0	0	21	58	32.04%	5	
실강+실영상반	515659	14	7	0	0	21	58	32.04%	5	
실강+실영상반	515726	12	9	0	0	21	58	32.04%	4	
수목 영상반	516173	7	14	0	0	21	58	32.04%	5	
온라인첨삭반	516415	12	9	0	0	21	58	32.04%	4	
실강+실영상반	515461	13	7	0	0	20	64	35.36%	5	
실강+실영상반	514475	14	6	0	0	20	64	35.36%	6	
실강+실영상반	515513	14	6	0	0	20	64	35.36%	5	
실강+실영상반	515662	15	5	0	0	20	64	35.36%	4	
실강+실영상반	515679	15	5	0	0	20	64	35.36%	5	
실강+실영상반	515685	15	5	0	0	20	64	35.36%	6	

실강+실영상반	515731	14	6	0	0	20	64	35.36%	4
온라인첨삭반	515732	9	11	0	0	20	64	35.36%	5
수목 영상반	516201	13	7	0	0	20	64	35.36%	4
온라인첨삭반	516310	10	10	0	0	20	64	35.36%	5
온라인첨삭반	516825	10	10	0	0	20	64	35.36%	5
온라인첨삭반	517077	11	9	0	0	20	64	35.36%	4
실강+실영상반	515548	10	9	0	0	19	76	41.99%	5
실강+실영상반	515614	18	1	0	0	19	76	41.99%	5
실강+실영상반	515738	9	10	0	0	19	76	41.99%	5
실강+실영상반	515739	14	5	0	0	19	76	41.99%	4
실강+실영상반	515984	16	3	0	0	19	76	41.99%	5
실강+실영상반	516043	10	9	0	0	19	76	41.99%	5
온라인첨삭반	515655	11	8	0	0	19	76	41.99%	4
온라인첨삭반	515668	11	8	0	0	19	76	41.99%	5
온라인첨삭반	516114	19	0	0	0	19	76	41.99%	5
실강+실영상반	516904	12	7	0	0	19	76	41.99%	5
온라인첨삭반	516691	16	3	0	0	19	76	41.99%	5
실강+실영상반	515370	10	8	0	0	18	87	48.07%	4
실강+실영상반	515456	13	5	0	0	18	87	48.07%	5
실강+실영상반	515459	15	3	0	0	18	87	48.07%	5
실강+실영상반	515446	15	3	0	0	18	87	48.07%	5
실강+실영상반	515475	8	10	0	0	18	87	48.07%	5
실강+실영상반	515398	12	6	0	0	18	87	48.07%	4
실강+실영상반	515403	15	3	0	0	18	87	48.07%	6
실강+실영상반	515480	11	7	0	0	18	87	48.07%	5
실강+실영상반	515481	12	6	0	0	18	87	48.07%	5
실강+실영상반	516125	13	5	0	0	18	87	48.07%	5
실강+실영상반	515641	10	8	0	0	18	87	48.07%	5
실강+실영상반	515658	16	2	0	0	18	87	48.07%	5
실강+실영상반	515947	11	7	0	0	18	87	48.07%	5
실강+실영상반	516077	13	5	0	0	18	87	48.07%	4
실강+실영상반	516103	12	6	0	0	18	87	48.07%	5
온라인첨삭반	515988	9	9	0	0	18	87	48.07%	5
수목 영상반	516167	14	4	0	0	18	87	48.07%	5
온라인첨삭반	516230	12	6	0	0	18	87	48.07%	5
온라인첨삭반	516963	10	8	0	0	18	87	48.07%	5
실강+실영상반	514532	12	5	0	0	17	106	58.56%	5
실강+실영상반	515519	11	6	0	0	17	106	58.56%	5
실강+실영상반	515549	9	8	0	0	17	106	58.56%	5
실강+실영상반	515563	13	4	0	0	17	106	58.56%	5
실강+실영상반	515572	11	6	0	0	17	106	58.56%	4
실강+실영상반	515440	9	8	0	0	17	106	58.56%	5
실강+실영상반	515740	11	6	0	0	17	106	58.56%	6
온라인첨삭반	515688	13	4	0	0	17	106	58.56%	4
실강+실영상반	515487	10	6	0	0	16	114	62.98%	5
실강+실영상반	515385	9	7	0	0	16	114	62.98%	5
실강+실영상반	515479	8	8	0	0	16	114	62.98%	4
실강+실영상반	515482	12	4	0	0	16	114	62.98%	6
실강+실영상반	515347	15	1	0	0	16	114	62.98%	5
실강+실영상반	515373	10	6	0	0	16	114	62.98%	5
실강+실영상반	516023	12	4	0	0	16	114	62.98%	4
수목 영상반	516559	9	7	0	0	16	114	62.98%	5
온라인첨삭반	516199	12	4	0	0	16	114	62.98%	5
실강+실영상반	515417	13	2	0	0	15	123	67.96%	5
실강+실영상반	515535	13	2	0	0	15	123	67.96%	5
실강+실영상반	515997	15	0	0	0	15	123	67.96%	4
실강+실영상반	516082	14	1	0	0	15	123	67.96%	5
온라인첨삭반	515826	15	0	0	0	15	123	67.96%	6
수목 영상반	516169	5	10	0	0	15	123	67.96%	4
실강+실영상반	515423	14	0	0	0	14	129	71.27%	5
실강+실영상반	515472	14	0	0	0	14	129	71.27%	5
실강+실영상반	515381	14	0	0	0	14	129	71.27%	4
실강+실영상반	515527	8	6	0	0	14	129	71.27%	5
실강+실영상반	515579	14	0	0	0	14	129	71.27%	4
실강+실영상반	515844	14	0	0	0	14	129	71.27%	5
실강+실영상반	516105	12	2	0	0	14	129	71.27%	5
온라인첨삭반	517107	7	7	0	0	14	129	71.27%	4
실강+실영상반	515444	13	0	0	0	13	137	75.69%	5
실강+실영상반	515483	10	3	0	0	13	137	75.69%	5
실강+실영상반	515355	10	3	0	0	13	137	75.69%	3
실강+실영상반	515420	10	3	0	0	13	137	75.69%	4

실강+실영상반	515504	11	2	0	0	13	137	75.69%	5
실강+실영상반	515564	13	0	0	0	13	137	75.69%	5
실강+실영상반	515643	12	1	0	0	13	137	75.69%	5
실강+실영상반	515664	11	2	0	0	13	137	75.69%	5
실강+실영상반	516046	12	1	0	0	13	137	75.69%	5
실강+실영상반	516051	12	1	0	0	13	137	75.69%	5
온라인첨삭반	516120	13	0	0	0	13	137	75.69%	5
온라인첨삭반	516276	8	5	0	0	13	137	75.69%	4
온라인첨삭반	516329	6	7	0	0	13	137	75.69%	5
실강+실영상반	515490	11	1	0	0	12	150	82.87%	5
실강+실영상반	515447	9	3	0	0	12	150	82.87%	5
실강+실영상반	515466	12	0	0	0	12	150	82.87%	5
실강+실영상반	515468	11	1	0	0	12	150	82.87%	4
실강+실영상반	515539	11	1	0	0	12	150	82.87%	4
실강+실영상반	515670	11	1	0	0	12	150	82.87%	5
실강+실영상반	515734	12	0	0	0	12	150	82.87%	5
실강+실영상반	515846	12	0	0	0	12	150	82.87%	5
실강+실영상반	516030	12	0	0	0	12	150	82.87%	5
온라인첨삭반	516195	12	0	0	0	12	150	82.87%	5
실강+실영상반	515392	9	2	0	0	11	160	88.40%	5
실강+실영상반	515517	11	0	0	0	11	160	88.40%	5
실강+실영상반	516035	10	1	0	0	11	160	88.40%	4
수목 영상반	516881	8	3	0	0	11	160	88.40%	4
온라인첨삭반	516212	11	0	0	0	11	160	88.40%	5
온라인첨삭반	516284	11	0	0	0	11	160	88.40%	5
실강+실영상반	515378	10	0	0	0	10	166	91.71%	5
실강+실영상반	515650	10	0	0	0	10	166	91.71%	5
수목 영상반	516148	10	0	0	0	10	166	91.71%	5
수목 영상반	516130	10	0	0	0	10	166	91.71%	5
온라인첨삭반	517018	10	0	0	0	10	166	91.71%	6
실강+실영상반	515369	9	0	0	0	9	171	94.48%	5
실강+실영상반	515409	9	0	0	0	9	171	94.48%	4
실강+실영상반	515506	8	1	0	0	9	171	94.48%	5
실강+실영상반	515672	9	0	0	0	9	171	94.48%	5
실강+실영상반	516008	7	2	0	0	9	171	94.48%	4
실강+실영상반	516106	8	1	0	0	9	171	94.48%	5
온라인첨삭반	515592	9	0	0	0	9	171	94.48%	4
온라인첨삭반	516115	8	1	0	0	9	171	94.48%	4
온라인첨삭반	517150	6	3	0	0	9	171	94.48%	5
온라인첨삭반	516239	1	7	0	0	8	180	99.45%	4
실강+실영상반	515509	5	0	0	0	5	181	100.00%	6
실강+실영상반	515448	0	0	0	0	0	182	100.55%	#DIV/0!
실강+실영상반	515469	0	0	0	0	0	182	100.55%	#DIV/0!
실강+실영상반	515489	0	0	0	0	0	182	100.55%	#DIV/0!
실강+실영상반	515640	0	0	0	0	0	182	100.55%	#DIV/0!
실강+실영상반	515733	0	0	0	0	0	182	100.55%	#DIV/0!
실강+실영상반	514984	0	0	0	0	0	182	100.55%	#DIV/0!
실강+실영상반	515357	0	0	0	0	0	182	100.55%	#DIV/0!
실강+실영상반	515439	0	0	0	0	0	182	100.55%	#DIV/0!
실강+실영상반	515507	0	0	0	0	0	182	100.55%	#DIV/0!
실강+실영상반	515514	0	0	0	0	0	182	100.55%	#DIV/0!
실강+실영상반	515552	0	0	0	0	0	182	100.55%	#DIV/0!
실강+실영상반	515569	0	0	0	0	0	182	100.55%	#DIV/0!
실강+실영상반	515913	0	0	0	0	0	182	100.55%	#DIV/0!
실강+실영상반	515661	0	0	0	0	0	182	100.55%	#DIV/0!
실강+실영상반	515676	0	0	0	0	0	182	100.55%	#DIV/0!
실강+실영상반	515925	0	0	0	0	0	182	100.55%	#DIV/0!
실강+실영상반	515928	0	0	0	0	0	182	100.55%	#DIV/0!
실강+실영상반	515982	0	0	0	0	0	182	100.55%	#DIV/0!
실강+실영상반	515990	0	0	0	0	0	182	100.55%	#DIV/0!
온라인첨삭반	515555	0	0	0	0	0	182	100.55%	#DIV/0!
온라인첨삭반	515608	0	0	0	0	0	182	100.55%	#DIV/0!
온라인첨삭반	516092	0	0	0	0	0	182	100.55%	#DIV/0!
온라인첨삭반	516097	0	0	0	0	0	182	100.55%	#DIV/0!
온라인첨삭반	516140	0	0	0	0	0	182	100.55%	#DIV/0!
온라인첨삭반	516141	0	0	0	0	0	182	100.55%	#DIV/0!
온라인첨삭반	516142	0	0	0	0	0	182	100.55%	#DIV/0!
온라인첨삭반	516158	0	0	0	0	0	182	100.55%	#DIV/0!
온라인첨삭반	516162	0	0	0	0	0	182	100.55%	#DIV/0!
수목 영상반	516189	0	0	0	0	0	182	100.55%	#DIV/0!
수목 영상반	516566	0	0	0	0	0	182	100.55%	#DIV/0!

박형준/3월/기초GS+/4회/1번	채점자
	강경민

1. 문제 1

(1) 설문 1

진보성 판단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묻는 단문 문제였습니다. 판단 순서에 따라 답안을 다각적으로 구성한 후, 용이성 판단에 대해서도 빼먹지 않고 답안을 작성해주신 분들께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2) 설문 2

선행 발명이 출원 발명과 기술 분야가 다른 경우 인용발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원칙과 예외로 나누고, 경우에 따라 사안포섭을 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문제에서 갑 주장의 당부에 대해 물었음에도 '주장의 타당/부당 여부'가 아닌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로 결론 내려주신 답안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 답안 인상이 좋지 않으므로 반드시 문제에서 묻는 대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주의해주세요.

(3) 설문 3

결합 발명의 진보성을 출원인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보성 판단의 일반론만 길게 작성해주셨습니다. 판례에도 일정부분 점수 부여했으나, 실제 시험의 경우 점수 인정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나열식 답안보다는 사안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습해주세요.

① 구성 각각이 공지된 사정만으로는 진보성 부정할 수 없다.
② 결합에 대한 암시, 동기 등이 없다.
③ 결합으로 인한 특유한 과제해결원리 및 구성의 곤란성, 효과 측면에서 진보성을 인정해야한다.
④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후적 고찰이다.

이 4가지 내용을 해당 판례와 함께 빠트리지 않고 사안포섭 해주었는지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했습니다.

(4) 설문 4

진보성 판단 시 이차적 고려요소의 취급에 대해 다각적으로 서술한 정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했습니다.

박형준/3월/기초GS+/4회/2번	채점자
	강경민

2. 문제 2

(1) 설문 1

신규성 상실 사유로서 4가지를 법조문과 함께 관련 판례를 다양하게 적어주신 분들에게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2) 설문 2

‘구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실질적 동일에 대한 주 논점 판례는 대부분 잘 적어주셨지만 선결 판례로서 ‘동일성은 기술 사상의 실체에 착안하여 판단해야하고, 구성의 동일성에 의하되 효과도 참작한다.’ 에 대한 판례를 빠트린 답안이 많았습니다.
실질적 동일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상기 판례들을 먼저 적어주는 것이 논리 흐름상 자연스럽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 바랍니다.

(3) 설문 3

선행기술 단일 원칙에 대한 판례, 그에 따른 결론 잘 작성해주신 경우 점수 다 부여했습니다.

(4) 설문 4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에 의한 공지도 공지된 것으로 보되, 사안의 경우 발명 X의 구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신규성 상실되지 않는다는 흐름으로 답안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문제-1

(1) 진보성

Ⅰ. 法 제29조 제2항

i) 의의 및 취지

특허법은 기술발전의 촉진 및 산업발전을 위해,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ii) 신규성.

대법원<判例>는 진보성은 신규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진보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신규성 판단이 우선 행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Ⅱ. 구체적 판단방법

i) 출원발명 확정

대법원<判例>는 신규성·진보성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ii) 기술분야 확정

대법원<判例>는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출원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며,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iii)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 파악

대법원<判例>는 적어도 출원 당시의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판단한 다음,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iv) 선행발명 확정

대법원<判例>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判例>는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기술분야가 다른 경우, 그 비교대상 발명을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V) 대비

대법원<判例>는 출원발명을 선행발명과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출원발명을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심리한다고 하였다.

Vi) 판단.

진보성은 궁극적으로 출원발명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선행발명을 확정하고,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서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을 대비하여 판단한다.

(2) 기술분야

Ⅰ. 判例.

i) 원칙.

대법원<判例>는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기술분야가 다른 경우, 그 비교대상발명을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ii) 예외

그러나 <判例>는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기술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출원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도 하였다.

Ⅱ. 검토

i) 원칙

선행발명 1과 甲의 출원발명의 기술분야가 다르다면 선행발명 1을 근거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어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ii) 예시

예시적으로 선행발명 1의 기술적 구성이 해당 기술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출원발명의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선행발명 1에 의해 甲의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결합발명의 진보성

Ⅰ. 결합발명

발명 X는 선행 공지기술 A,B,C가 결합된 것으로서 결합발명에 해당한다.

Ⅱ. 진보성 판단방법.

i) 판단대상

대법원 <判例>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

ii) 판단방법.

대법원 <判例>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각각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iii) 선행문헌 결합요건.

대법원 <判例>는 여러 인용발명을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여러 선행발명으로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하였다.
	Ⅲ. 甲의 조치
	i) 공지 여부
	특허발명의 각 구성이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ii) 결합요건.
	통상의 기술자가 각각의 선행기술을 결합할 암시나 동기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iii) 구성의 곤란성
	공지된 각각의 구성이 결합하여 그 작용효과가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
	효과가 있어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iv) 사후적 고찰 금지.
	특허출원 당시의 기준으로는 발명에 이르기 쉽지 않은데도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 고찰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차적 고려요소.
	Ⅰ. 참작 가능성
	대법원 〈判例〉는 특허발명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
	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Ⅱ. 일차적 고려요소
	<判例>는 진보성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구성, 목적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기술에 기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
	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Ⅲ. 보충적 성격
	<判例>는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토대로 한 기술적 검토 결과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성공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Ⅳ. 결론
	상업적 성공은 이차적 고려요소로서 비 기술적인 요소이므로 기술적 인과성이 입증된다
	면, 이를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참작함이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타당하다.
	문제-2.
(1)	신규성
	Ⅰ. 의의 및 취지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바, 공지기술과 동일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Ⅱ. 신규성 상실사유
	신규성 상실사유에는 공지, 공연실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이 있다.
	i) 공지
	대법원 <判例>는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ii) 공연실시

대법원 〈判例〉는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iii)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반포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간행물이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의미한다.

〈判例〉는 게재에 관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iv)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

〈심사기준〉은 전기통신회선이란 전자기적 방식의 정보송수신 방법을 의미한다고 하고, 공중이 이용가능하다는 것은 불특정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한다.

(2) 동일성 판단방법.

Ⅰ. 동일의 의미

대법원 〈判例〉는 그 기재상의 표현 또는 기재형식의 이동만을 비교하여서는 안 되고 기술적 사상의 실체에 착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Ⅱ. 판단방법.

대법원 〈判例〉는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한다고 하였다.

i) 내재적 동일.

〈判例〉는 양 발명의 실시례가 동일하면 기술사상이 동일하다고 한다.

ii) 실질적 동일

〈判例〉는 양 발명의 구성에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 양 발명은 동일하다 하였다.

Ⅲ. 검토.

i) 원칙

리모컨 회로 X(A+B+C)와 선행발명 1(A+B+C')은 구성C와 C'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다 볼 수 없고, 따라서 거절이유는 부당하다.

ii) 예외

C와 C'의 채용에 의한 발명의 구체적 실시례가 동일하거나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거절이유가 타당하다.

(3) 선행기술 단일의 원칙

Ⅰ. 判例.

〈判例〉는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을 1대1로 비교하여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나와있어야 하고, 특허발명의 구성이 2개 이상의 선행발명에 일부씩 나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Ⅱ. 검토.

선행발명 1(A+B) 및 선행발명 2(C)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한 거절이유통지는 선행기술 단일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4) 용이실시

2

Ⅰ. 요건

〈判例〉는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라 함은 그 내용이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발명을 말한다고 하였다.

Ⅱ. 외부촬영사진

〈判例〉는 당해 간행물을 보면 인용발명을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 1장만 게재되어 있을 뿐 그 명칭이나 용도, 구조 및 작용효과에 관한 설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등록발명과 인용발명을 그 목적, 구성, 작용효과에 있어서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등록발명은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Ⅲ. 검토

乙이 인터넷 블로그에 리모컨의 외형 사진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그 리모컨 내부의 리모컨 회로 X의 구성을 알 수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리모컨회로 X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1>

Ⅰ. 서론(1)

1. 진보성 의의 및 취지

특허는 공개의 대가이고, 기술발전 촉진 및 산업발전을 위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법 29②)

2. 진보성 판단방법 (특허청)

①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② 출원발명의 기술사상과 청구범위 및 선행발명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하고, ③ 출원발명과 가장 가까운 주선행발명을 선택하여, ④ 출원발명과 주선행발명을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핀 뒤,

⑤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행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⑥ 이때,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 고찰을 해서는 안된다.

3. 통상의 기술자의 의미

특허청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보통의 이해력을 가진 평균의 기술자'라고 설시하며, 실무적으로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3~4년 실무를 담당한 가상의 자연인을 상정한다.

4. 용이성 판단 방법 - 구성의 관련성 (牛川列)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구성의 관련성을 따져보아야 하고 이때 효과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한다.

만약 구성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면, 현저한 효과는 구성의 관련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Ⅱ. (설문(2))

1. 선행발명의 기술분야의 범위

i) 牛川列는 원칙적으로 당해 출원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의미하고, 산업분야가 다른 경우 선행발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ii) 그러나 선행발명의 구성이 특정 기술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 기술수준으로 당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극복해 보려는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선행발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2. 甲 주장의 타당성 검토 (일부 타당)

i) 원칙적으로 선행발명과 출원발명이 이용되는 기술분야가 다른 경우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발명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하다.

ii) 그러나 심사관이 해당 선행발명의 구성이 ① 특정 기술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②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임을 입증한다면, 기술분야가 다르더라도 선행발명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때에는 甲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출원발명이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거절결정될 것이다.

Ⅲ. 쟁점(3) 5

1. 결합발명의 의의

여러 개의 구성이 결합된 발명을 의미한다.

2.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대상

심사기준은 결합발명이 복수의 구성을 분해하여 개별적으로 공지되었는지 판단해서는 안되고, 특허발명이 특유한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성 전체라서의 구성의 관련성을 따져보아야 하고, 이때 결합된 전체라서의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한다고 한다.

3. 복수의 선행문헌 결합 가부

심사기준은 복수의 선행문헌을 결합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① 해당 결합에 의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② 출원당시 기술수준, 기술상식, 기본적인 과제, 발전방향,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면

출원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한다.

4. 선행문헌의 내용 (역교시)

判例는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진보성을 판단하되, 출원발명에 배치되거나 이를 불확실하게 하는 다른 선행문헌이 있는 경우 그 내용까지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5. 주장① - 선행문헌 결합 불가

선행문헌으로부터 출원발명에 이르는 것을 단념하게 하거나 선행문헌을 참작하지 않게끔 가르치는 내용이나 다른 선행문헌의 존재를 주장·입증하여 해당 선행발명 A, B, C 로부터 A+B+C를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6. 주장② - 새로운 상승효과 주장.

공지된 선행문헌에 해당 결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 A+B+C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어 구성의 곤란성이 있고,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II. 설문(4)

1. 진보성 판단방법.

判例는 진보성 판단 시 우선적으로 출원발명의 구성, 목적, 효과를 고려해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한다.

2. 이차적 고려요소. (判例)

상업적 성공 또는 장기간 미실시 등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출원발명을 통해 상업적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검토

진보성 판단의 일차적 고려요소인 '구성, 목적, 효과'는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이차적 고려요소인 상업적 성공 등을 참작하는 것은 타당하나, 진보성 판단 원칙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도출 가부인 바, 判例가 타당하다.

끝

<문제 -2>

I. 설문(1)

1. 신규성 의의 및 취지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 바, 공지기술과 동일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法 29①)

2. 신규성 상실 사유 (法 29① 각호)

(1) 공지

1) 의의

本件例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가) 불특정 다수인의 의미

本件例는 일반 공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라면 그 수의 많고 적음은 불문한다고 하였다.

(2) 공연실시

1) 의의

本件例는 비밀유지 의무 등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2) 용이실시(本件例)

통상의 기술자가 그 실시된 내용에 의하여 그 발명의

보충하여 변경시킬 필요없이 직접 쉽게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1) 반포된 간행물

판례는 공개를 위해 복제된 도화, 문서 사진 등을 의미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2) 게재 (판례)

미완성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표현이 불충분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경험칙에 의해 용이하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4)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한 공중의 이용가능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도입되었다.

II. 설문(2) 5

1. 동일성 판단 방법. (판례)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기재 형식 등의 이동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기술사상의 실체를 착안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2. 일부 구성이 변경이 있는 경우 (판례)

신규성 판단 시 출원발명이 선행발명의 구성

일부를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도 없는 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할 경우 양 발명은 동일하다.

3. 사안의 경우

신규성 판단 시 동일성 판단은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에 의하되, 기술적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라도 甲 발명에서 구성 C의 도입이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않고 선행발명에 비해 새로운 효과도 없는 등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거절이유는 타당하다.

Ⅲ. 설문(3) 2

1. 신규성 판단 시 선행발명 단일의 원칙

부히레는 선행발명과 출원발명을 일대일로 비교하여, 선행발명에 출원발명의 구성 전부가 나와 있어야 하고, 2 이상의 선행발명에 출원발명의 구성 일부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2. 사안의 경우

① 출원발명의 구성 A+B+C가 전부 포함된 선행발명을 심사관이 인용한 바 없으며,

② 두 개의 선행발명(1, 2)에 출원발명의 구성 일부가 ㉮ 각각 존재하는 경우에 불과하므로

③ 거절이유는 부당하다.

III. 설문(4)

1. 신규성 상실사유 - 법29①(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된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

2.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공지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발명을 공지한 자가 비밀유지의무 약정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공지 시점부터는 발명이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3. 내부에 기술사상이 존재하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내부㉮에 발명의 기술사상이 존재하는 경우, 외부가 촬영된 사진이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내부 구성을 알 수 있어 공지를 부정한 바 있다.

4. 사안의 경우

A가 乙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더라도 그가 발명을 블로그(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정보제공)를 통해 발명을

공개했다면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내부에 기술사상의 개념이 있는 발명의 외부 사진이
게재된 것에 불과하여 본원 발명은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끝.

<이하여백>

수고하셨습니다